

성과상여금지급 시행세칙

제	정	2005. 05. 12
개	정	2005. 12. 02
개	정	2006. 12. 27
개	정	2008. 01. 24
개	정	2009. 01. 30
개	정	2010. 12. 22
개	정	2012. 02. 13
개	정	2015. 06. 30
개	정	2016. 01. 04
개	정	2016. 03. 10
개	정	2016. 09. 28
개	정	2017. 12. 19
개	정	2022. 09. 08

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성과상여금(이하 “성과금”이라 한다)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12.19>

제2조(적용범위)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세칙에 의한다.

제 2 장 지급대상과 지급방법

제3조(지급대상 및 기준) ① 대표이사 및 2급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금을 지급하며,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.<개정 2005.12.2., 2016.9.28., 2017.12.19.>

1. 직원의 경우, 전년도 12월 31일(이하 “지급기준일”이라 한다.) 현재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. <개정 2016.1.4., 2017.12.19.>
2. 휴직, 병가, 직위해제, 교육훈련 파견, 징계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월할계산에 의하여 제외한다. 단,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병가는 지급기간에 포함한다. <개정 2016.1.4., 2017.12.19.>
3.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16.1.4., 2017.12.19.>
4.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인사평가를 받지 않은 직원은 기준등급(B등급)의 지급비율을 적용한다. <신설 2017.12.19.>
5. 대표이사의 경우,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재임한 연도는 재임기간으로 배분하여



지급한다. <신설 2017.12.19.>

②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해당연도에 업무 및 근무태도 등과 관련하여 중징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은 최하등급을 지급하고, 경징계를 받은 직원은 기준등급(B등급) 이하로 조정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08.1.24., 2016.1.4., 2017.12.19.>

③ 비위, 횡령, 성폭력범죄, 성매매, 성희롱, 음주운전 등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 [전문개정 2010.12.22., 개정 2017.12.19.]

④ 위의 각 호 외의 지급대상 및 기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. <신설 2016.9.28., 개정 2017.12.19.>

제4조(지급단위 및 방법) ①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경영성과계약서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한다. <개정 2009.1.30., 2012.2.13., 2017.12.19.>

② 직원의 경우에는 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개인별 인사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성과금을 지급하며, B등급을 기준비율로 하여 차등 지급한다. <개정 2009.1.30., 2012.2.13., 2017.12.19.>

제5조(지급등급) ① 성과금의 지급등급과 등급별 지급율은 “별표 1”과 같다.

② 이사장은 재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5%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6.12.27.>

③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S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성과가 탁월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%(공무직 120%)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6.12.27., 2012.2.13., 2022.9.8.>

④ 삭제<2015.6.30.>

제6조(지급기준액) ① 성과금의 지급기준액은 “별표 2”와 같다. <개정 2012.2.13., 2016.3.10.>

②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해당연도 중 6개월 이상 상위직급의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인사평가를 받은 경우에는,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 상위직급의 지급 기준액을 적용할 수 있다. <신설 2016.3.10.>

제7조(평가방법) ① 개인별 지급등급은 인사규정 제34조(근무평정)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에 의하여 결정하되, 반영비율은 대표이사가 정한다. <개정 2010.12.22., 2012.2.13.>

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근무성적평정결과 이외에 재단의 성과 평가결과(예 :부별 목표달성도 평정점)등 별도의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. <개정 2006.12.27., 2012.2.13.>

③ 이사장은 직무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성과시스템을 도입한 경우 등 별도의 성과평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와 달리 할 수 있다. <개정 2006.12.27.>

제8조(다면평가) ① 삭제<2012.2.13.>



② 삭제<2012.2.13.>

제9조(순위명부 작성) 삭제<2017.12.19.>

제10조(성과상여금 지급) ① 이사장은 매년 1월말까지 성과상여금 지급 평가를 완료하고, 기관 경영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비율이 확정된 이후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. < 개 정 2006.12.27., 개정 2016.9.28.>

②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5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8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2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2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

[별표 1]

<개정 2006.12.27., 2009.1.30., 2010.12.22., 2012.2.13., 2016.9.28., 2017.12.19.>

성과상여금 적용 대상직원

적 용 대 상	대표이사 및 직원 (공무직 포함)
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
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

지 급 등 급	지 급 비 율	지 급 액
S등급	상위 10% 이내	지급기준액 × 기준비율(100%)
A등급	10% 초과 ~ 30% 이내	지급기준액 × 기준비율(85%)
B등급 (경영평가 지급기준비율)	30% 초과 ~ 70% 이내	지급기준액 × 기준비율(70%)
C등급	70% 초과 ~ 90% 이내	지급기준액 × 기준비율(55%)
D등급	90% 초과 ~ 100%	지급기준액 × 기준비율(40%)

- ※비고 : 1. 대표이사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통보되는 지급기준비율에 의해 지급한다.
 2. 직원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통보되는 지급기준비율과 기준비율(B등급, 70%)과의 배수차이를 계산하여 모든 등급에 동일한 비율로 적용 후 차등지급한다. 단,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

[별표 2]
<개정 2005.12.2., 2008.1.24., 2010.12.22., 2012.2.13., 2016.9.28., 2017.12.19.>

성과상여금 ‘지급기준액’	
(단위 :원)	
적 용 대 상	지 급 기 준 액
대 표 이 사 및 직 원 (공 무 직 포 함)	기 본 연 봉 월 액

[별표 3]
삭제 <2012.2.13.>



[별지 제1호 서식] 삭제<2017.12.19>

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

